

# 책값파괴, 업계 자정노력으로 극복해야

재경원서 '정가제 개선촉구안' 권고 … 출판계 특별위원회로 대책 강구

출판계의 '뜨거운 감자'인 재판매가격유지제도(도서정가제)의 폐지 움직임에 대한 출판계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논란을 거듭했던 도서정가제 논의가 부분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지난 1일 문화체육부에 보낸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개선 촉구' 공문에 따르면, 재경원은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할인판매금지기간을 현행 출판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 학습참고서 가격을 최대한(20% 이상) 자율 인하 ▲ 채택부조리 근절 ▲ 학습참고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율 기능 강구 ▲ 잡지의 경우 과월(주, 계절)호를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에서 제외.

여기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제 도서정가제의 존폐 여부는 관련업계의 자정노력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되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에서도 출판·서점업계의 자정 움직임을 적극 유도해 적정한 가격으로 질 좋은 책을 공급하는 도서정가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 도서정가제 현행 골격 유지

"출판계가 자생력을 갖게 될 때까지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경원과 의견을 나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정

**출판유통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뜻있는 출판인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정가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출판인이다.  
정가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이익이 독자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지난 9일 '자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학습자료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진 설명회.

노력을 통해 참고서 채택료 비리를 근절하고, 거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 출판진흥과 최경순씨가 밝힌 문화체육부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준호)를 비롯한 출판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자정' 대상인 참고서를 폐내는 출판사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회장 최낙춘)는 12개 회원사로 이뤄진 '자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9일 학습자료협회가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행한 '도서정가제 유지 및 대처방안 설명회'에는 80여 회원사가 참여해 최근의 위기의식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정 대책 특위'가 마련

한 결의사항이 고지되었는데, 143개 회원사에 서면 발송해 찬성 83, 반대 7로 채택한 결의사항은 ▲ 참고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율기구 설치 ▲ 97년 3월 기준으로 참고서 가격 10% 일괄 인하 ▲ 출고가 60% 이상 지키기 등이다.

이날의 회의는 도서정가제와 최근 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출판인들의 인식이 절저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도서정가제의 본뜻과 취지는 물론이고, 도서정가제의 붕괴가 몰고 올 심각한 과급효과에 대해서도 무지를 드러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출판인은 "도서정가제가 출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매가격유지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이 유지되는 상품은 유통단계에서 가격수준을 유지해 판매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주고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협력을 확보하거나 소매가격을 유지해서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준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구속하고,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물과 그밖에 일정한



## 가격파괴는 일시적인 현상

### 정종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도서정가제가는 독자(소비자)·서적상(유통업자)·출판인(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정착된

제도다. 지난 20년동안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출판사가 고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정가제 폐지로 인한 가격파괴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정가제가 무너지면 가격경쟁에서 이긴 출판사가 살아남아, 저질도서가 비싼 가격으로 유통된다.

정부의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처음에는 경제논리를 내세우지만, 우리의 문화환경과 도서정가제의 의의를 꾸준히 설명하면 수긍한다.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이해할 무렵, 주관 부서의 사람이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설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 채택료 명단 공개도 고려

### 최낙춘

학습자료협회 회장·학림출판사 대표



자정노력에 힘을 쏟겠다. 채택료 비리 근절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출판인·서점인·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채택을 받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일은 반드시 뿌리뽑혀야 한다. 하지만, 부교재 채택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행 입시제도 아래서는 참고서를 봐야만 하고, 교재 채택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참고서 선택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처럼 운영위원회를 통한 참고서 선택 절차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 도서관 진흥기금이 필요없는 사회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로 한다.

## 위탁판매와 긴밀한 연관

우리나라의 도서가격제도는 6·25이후 1977년까지 할인가격제도였고, 6·25이전과 현재는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할인가격제 도의 권장 소비자가격은 단순한 판매의 기준이 될 뿐이지만, 정가제에서는 할인이나 할증 없이 정해진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책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것은 위탁판매제도와 관련이 깊다. 책이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책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출판사에 있기 때문이다.

20여년간 별탈없이 지탱되어온 도서정가제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은 대형할인판매점에서 책을 싸게 팔면서부터. 94년 서적상연합회는 정가의 70~80%로 책을 파는 프라이스 클럽에 책을 공급하는 22개 출판사를 제재할 것을 출판협회에 요청했다. 출협은 해당 출판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3개 출판사만 응했을 뿐이다. 오히려 프라이스 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출판·서점계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출협과 서적상연합회가 위임 체결한 계약서의 구속력이 법적 구속력보다 약한 것은 당연한 일. 또, 할인판매점에 책을 공급한 22개사 가운데 절반인 11개사는 위임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95년 출판·서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정가제 개선에 잠정 합의하고, 2년간 유보시한을 갖기로 한다. 유보시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터져나온 뿌리깊은 채택료 비리는 도서정가제를 쟁점으로 만들었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외국 유통업체의 편의를 봐주려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출판계의 시각을 당국은 경청해야 할 듯하다.

경제논리로 도서정가제에 접근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쉽게 부각된다. 재경원 당국자는 도서정가제 철폐의 근거로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에 있는 도서 발행종수 및 부수의 통계수치를 들고 있다. 정가제가 가격경쟁을 제한한 탓에 출판계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정가제 덕분에 그나마 발행종수가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줄이기 차원에서 참

고서값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 의지도 일면 수긍이 기지만, 그것이 전체 사회의 변화와 연계되지 않을 때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를 반영하는 정부 당국자와 출판 관계자의 대화 한토막.

“참고서 가격을 낮춰라”  
“그러면 담합이 아닌가?”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담합이 아니다.” 출판유통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뜻있는 출판인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도서정가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출판인들이다. 일부 참고서 출판사는 서울지역 도매상으로의 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도매상에 출고하는 방법으로 채택료의 재원을 마련한다. 지방에 싼 가격으로 출고된 책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할인판매를 조장하기도 한다.

벼룩 잡는다고 초기삼간까지 다 태울 수는 없는 법. 정가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이익이 독자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있어야

노병성(협성대 광고홍보학과)교수는 “2년으로 조정된 할인판매금지기간을 1년으로 낮춰야 한다. 참고서·잡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 정가제를 푸는 방안도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품 주기가 짧아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책이 되돌아오는 만큼 2년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얘기다.

노교수는 참고서에 대한 정가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참고서 시장은 대기업들에 의한 ‘과점시장’이기에 선불리 가격경쟁을 유도할 경우, 도리어 책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도서정가제에 대한 일반 및 출판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고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 모르는 사항이 많다. 출협이 주관하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세미나를 통해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 최성일 기자

## 도서관 기금이 왜 생겼는지

## 점검한다면 감사원의 특별감사

## 결과 ‘폐지권고’를 하지

##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감사원도

## 이 시점까지 책이나 도서관의

## 중요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 못한다는 현실을 재확인케 한다.

기애 막대한 특별구입비를 추가한 것이다.

우리 경우는 오늘 이 시점에도 제대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단 하나가 없다. 무엇보다 책을 사들일 재정이 없다. 지난 몇년간 문체부는 공공도서관당 연 1천 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재경원에 요구해 왔다. 그리고 번번이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예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경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겨우 성립시켰던 기금마저 폐지 대상으로 지적되었으니, 이는 진흥법 자체가 무효화한 셈이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실은 도서관이나 독서진흥이 문예진흥의 한 항목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문예진흥과 도서관진흥은 근본적으로 그 운동장이 다르다. 도서관이란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교육·평생교육·국민교육의 기본적인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제도를 뜻한다. 미국의 성장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룬 공공도서관 제도에서 비롯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문예진흥의 과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물질영역에서의 사회 기초항목으로 전기·수도시설이 꼽히듯이, 정신과 창조 영역에서의 기초시설은 도서관이다.

하긴 대부분의 사람이 책 읽기를 우습게 알고 있고, 책 한권 안 읽고도 입신 출세가 되는 나라이니까, 그저 가끔 키링타임용으로 저질에 속하는 에세이류 베스트셀러 제목이나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지성인 행세를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도서관쯤은 내버려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리 멀어도 10년 내에 진실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빼 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읽기가 없는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창조적 상상력의 부실이다.

정보산업시대의 자산은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두뇌일 뿐이다. 단순노동력은 지금 소멸되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이다. 도서관 진흥기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살아갈 길은 없다. ♦